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78
----------	-----

2019년 9월 6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8월 7일 강동길 의원 대표발의
2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3. 상정일자 :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9년 9월 2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강동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가.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·외래치료 지원·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 불안 해소 및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강화와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전정인 사례관리 지원 등을 규정함(안 제8조의2제1항 신설).
- 나.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함(안 제8조의2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·외래치료 지원·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등록의 활성화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시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과 관련

-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각각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두고 있고 1개소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두고 있음.
 - 이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된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,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역할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기술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- 그러나 하단의 표에서 보듯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회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.

연도	2017	2018	2019
회원수	13,853	12,488	12,114
조현병	5,941	5,384	5,178
우울증	3,341	3,109	3,024
그 외	4,571	3,995	3,912

-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필요한 아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가 명확히 작성되고 있지는 않으나, 알코올·니코틴과 같은 물질중독 관련 질환을 포함하는 경우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25.4%¹⁾에 이르는 등 정신보건분야에 있어 큰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임.
 -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평생 유병율이 0.5% 주요우울의 경우 5.0%에 이르고,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건강전문의를 만난 경험은 7.0%로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문제가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정신질환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,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홍보하는 등 서비스 유인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.

1) 보건복지부 정신장애 평생유병율(성과 연령의 보정) 자료 출처 : KOSIS

나.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과 관련

- 개정안은 양질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.
- 서울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시비 100%로 운영하고 있으며,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시비와 구비 각각 50:50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어 확충에 대한 예산은 이미 기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. 다만, 현재보다 확대하는 경우 자치구 예산의 매칭 등이 필요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자치구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.
- 또한 개정안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.

3 집행부서 의견

-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.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강화, 사례관리 등과 관련한 개정안 제8조2제1항과 관련하여
 - 현행 조례안 제3조 ①(시장의 책무), 제6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,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, 사례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.

- 다음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과 관련한 개정안 제8조2제2항과 관련하여
 - 현행 조례안 제8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, 제11조(운영예산의 지원)에 의거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책무 포함
 -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자치구 조례에 의거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등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 협의 필요 사항

- 집행부 의견을 토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. 개정안이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.
 - 의견 1의 경우 현행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경우 등록활성화라기 보다는 예방적 조치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며, 등록활성화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해당하는 특별한 내용으로 사업범위를 일부 확대 또는 개편하는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음.
 - 의견 2의 경우 전술한바 자치구청장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짐.

의견	현행 조례	개정안
1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의2(등록의 활성화 등)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,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
2	<p>제11조(운영예산의 지원)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② 시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4 종합의견

-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기능개편이나 확대와 관련한 안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.
- 그러나 집행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볼 때 자치구청장 소관 사항인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대한 인력 확충 및 지원 등에 있어서

시장이 자치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바, 조례안의 실효성 담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 동 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7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발 의 자 : 강동길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기덕, 김종무, 문장길,
송명화, 이승미, 이은주,
이태성, 이호대, 정재웅,
조상호, 홍성룡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·외래치료 지원·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 불안 해소 및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강화와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전정인 사례관리 지원 등을 규정함 (안 제8조의2제1항 신설).
- 나.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함(안 제8조의2 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등록의 활성화 등)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
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
강화하고,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
정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
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8조의2(등록의 활성화 등) ①</p> <p><u>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,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(등록의 활성화 등)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 - 같은 조례안 같은 조 제1항을 신설하는 것은, 기추진사업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<참고>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(보건복지부, 59쪽~일부발체)-안 제8조의2제1항 관련

- 기초정신건강센터 주요사업
 - 지역주민센터, 지역사회복지관,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(희망복지지원단, 찾아가는 복지전담팀, 자활센터, 드림스타트, 의료급여팀, 노인돌봄기본서비스, 방문건강관리팀 등)과의 신규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
 -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 -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시 소득, 의료비, 주거, 자활, 건강관리, 돌봄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
담당관
정책조사팀장
주무관

예산정책담당관

남승우

여차민

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